

특산물판매장 무상 사용 동의(안)

안건: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시행된 특산물 판매장 무상사용 동의

의 안 번 호	2001
------------	------

제출 일자 : 2001. 5. 26

제출자 : 광양시장

1. 제안이유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산물 개발과 휴양공간 제공으로 산촌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활 환경 개선하여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고 특색있는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금천지구 산촌종합개발 사업 모든 부지를 마을에서 무상 사용 동의하여 시행 되었기에 특산물 판매장을 마을에서 무상 대부 관리토록 추진
- 산촌 개발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단기 임산물 및 밤, 녹차, 매실등을 특산물 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서 농가 소득 향상 및 판로 개척에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때 지방의회 동의시 무상 사용가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